

2026학년도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 운영방안 설명회

2026. 5. 6.

발표자 | 산학협력단 연구진흥본부장 박익재

목 차

- 1.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 개요**
- 2.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요건**
- 3. Stipend 와 연구개발기관계정 연계모델**
- 4.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표준업무절차**
- 5. 우리대학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운영 방안**
- 6. 사업 안정성 저해사례관리**
- 7.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실적 및 목표**

1.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 개요

- ✓ 2025. 9.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기관계정 지정
- ✓ 2025. 9. 하반기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개시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기관계정

1. 기관계정 운영 배경

- 2025. 3. 6 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기관계정이 없는 경우 연구책임자계정의 일부 금액을 과기정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함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은 기관계정과 연구책임자 계정 병행 운영이 필수임
- **기관계정이 있어야 「이공계 연구생활 장려금 지원사업(한국형 Stipend)」 신청 자격 충족**

2. 연구개발기관계정 시행 개요

- 연구책임자계정에서 산단 기관계정으로 학생인건비 일부를 이체받아 기관계정에서 학생연구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지급함
- 기관계정운영 기관은 과기정통부가 정한 학위과정별 계상기준의 20% 이상을 균등지급하도록 함 (석사 44만원, 박사 60만원)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

1. 사업운영 목적

- ① 연구·학업 전념 위한 이공계 대학원생 최소한의 생활보장 정부재정지원사업
→ **석사 80만원, 박사 110만원 이상**
- ② 정부-대학-교원 공동 학생연구자 지원체계 보강
→ 대학차원의 학생지원금 지급강화 구조 구축
→ 정부지원금+ 대학자체 재정기여+ 대학 내 자율·책임 관리 통해 기관단위 인건비규모 적정 유지
- ③ 대학차원 학생연구자 지원 종합관리체계 구축
→ 전체 산단회계 학생지원금 지원·운용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이공계 학생연구자 처우관리 고도화

2.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시행

-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에게 최소 기준금액 대비 인건비 지급액 **부족분**을 장려금으로 지원함

2.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한국형 Stipend) 지원요건

- 지원 대학원생 요건: **일반대학원 이공계 전일제 연구활동중인 대학원생(재학,수료)**
- 산학협력단은 지원 대학원생 요건에 해당하는 전체 학생 명부를 매월 관리 및 점검함

1. 이공계 대학원생

공학계열	IT공학과	자연과학계	생명시스템학과
	기계시스템학과		수학과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식품영양학과
	응용물리학과		약학과/제약학과
	전자공학과		의류학과
	컴퓨터과학과(공학)		통계학과
	화공생명공학과		화학과
	헬스산업학(협동과정)		기후환경에너지학(협동과정)

학적상태: 재학 또는 수료(연구등록)

2. 전일제

-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로 확인(매 학기 제출 및 검증 예정)

3. 연구활동

- (현재) 연구과제(R&D 및 용역) 참여연구원
- 그 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 진행
(학위논문연구 수행, 과거 연구과제 참여이력
신임교원(임용 3년 이내) 연구실 소속 학생)

- 지원 대학원생 중 산단회계 지급 인건비가 기준금액(석사 80만원, 박사 110만원) 미만인 학생을 대상으로 **부족분**에 해당하는 장려금 지원함(대여-상환방식)

사업
핵심관리지표

- [초기] 이공계 대학원생 전원 기준금액 보장
- [중기] 이공계 대학원생 중 기준금액만 지급자수 점진적 감소
- [장기] 이공계 대학원생 평균 지급액 점진적 상향

3. 이공계연구생활장려금과 학생인건비 연구개발 기관계정 연계 모델

-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급액: 총지급액* <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 기준금액 (석사80/박사110)
 기준금액 대비 **부족분**을 대여하여 지급

*총지급액: 학생인건비, BK장학금, 정부(비통합관리), 민간, 지자체, 타기관에서 지급하는 총액



4.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표준업무절차

- 학기 단위로 운영이 원칙이나, 수시접수(매월 1~10일)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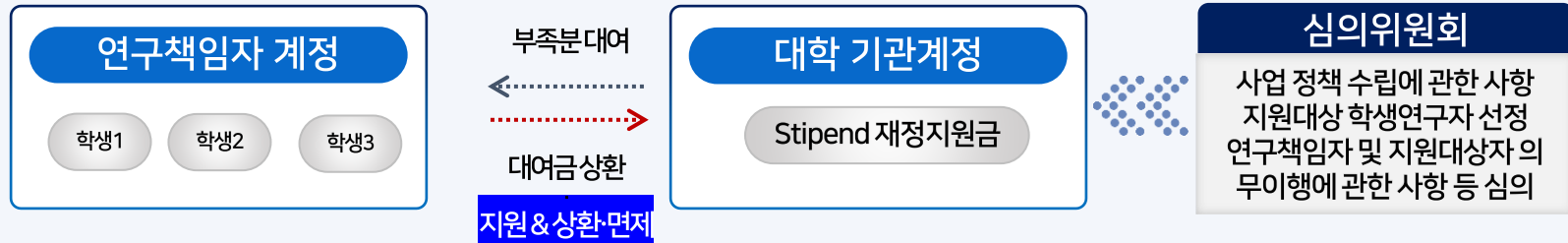
	기준금액 미만 학생 파악	장려금 지원 학생 확정	연구참여 확약 및 지급	점검 및 조치
시기	매 학기 초(3월/9월)	매 학기 초(3월/9월) (단, 수시모집대상은 매월 중순)	~25일	매 학기 말
연구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책임자] 학기별 학생인건비 지급계획 입력 • (기관계정)균등지급대상* 명단 제출 <p>*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책임자]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신청서, 의무이행확약서 제출 • [학생연구자] 전일제증빙, (학위논문작성시) 이전 연구과제참여확인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확인 및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책임자] 지원신청 시 확약한 지도교수 의무이행에 대한 자체점검서 제출 • (해당 시) 상환면제 확인서 제출
연구관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타이펜드 학생연구자 명부를 통해 기준금액 미만 학생 파악 • 대학원생 지도교수대상 지원신청 안내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위원회] 지원대상자 확정 • [연구관리팀] 지원대상자 부족분 확정 하여 연구생활장려금 입력 •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공계연구생활 장려금 지급(매월 25일) • 스타이펜드 학생연구자 명부 확정 • 지도교수에 대여금 확정 안내 및 의무이행내용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안정성 저해 사례 모니터링 위한 자체점검서 내용 확인 • 유관부서(연구진흥팀, 대학원 등)에 협조요청

5. 우리대학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운영 모델(대여-상환 원칙)

우리대학 대여-상환제도 원칙



- **대여 대상:** 본교 소속 전임교원 중 학생인건비 지급금액 기준 미만 보유중인 교원 (단, 임용 3년 이내의 신입교원 우선 배정)
- **대여 기간:** 2년 (위원회 심의 거쳐 필요성 인정되는 경우 추가 연장 가능)
- **상환의무:** 대여기간 만료 전 연구과제 수주 노력을 통해 연구책임자 학생인건비 계정 잔액으로 대여금 상환
대여기간 만료 전 전액 상환 불가시, 최소 25% 이상 금액에 대해 상환 의무(위원회 심의 거쳐 상환기간 연장 가능)
- **미상환 시 패널티:** 교내 연구비 지원 및 인센티브 혜택에서 제외 등 심의위원회에서 조치사항 결정



-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학생에 대한 부족분 대여액 중 **균등지급액**에 대해서는 장려금으로 순수 지원
- (지원) 임용 3년 이내 **신입교원**에 대해 **최대 2천만원** 한도내 장려금 순수 지원
- (**상환면제**) ① 연구처 인정 국제전문학술지 ② 교외연구과제 수주 실적 매칭 ③기관계정 기여도 대비 상환 면제



기관계정 지원 & 상환면제 병행

5. 우리대학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운영방안

상환 방식 개선: 상환·면제



→ 학교 연구실적 및 기관계정 기여도에 따라 대여금 상환 면제

(연구/과제실적) 대여기간 내 완료된 교원/학생 연구업적(연구처에서 인정하는 국제전문학술지, 교외연구과제 수주 실적 등)

(기관계정 기여) 학생인건비 전년도 잔액 의무이체 등 기여도 심의 후 상환 면제함

결과물	2026년 시행방안	상환면제액
국제전문 학술지	(교원: A-1 교내연구비 일반연구 지원 사업 준용) ·국제전문학술지 SCIE, SSCI 주저자(제1저자/교신저자) 게재 논문(단, JCR Rank 30%이내 논문만 인정)	논문 1건당 500만원
	(학생: A-7 대학원생 연구활동 지원 사업 준용) ·국제전문학술지(SCIE, SSCI, A&HCI, SCOPUS) 주저자 (제1저자/교신저자) 게재 논문	논문 1건당 500만원
교외연구과제 간접비 수입	·연구생활장려금 신청 전임교원이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과제 수주 및 계약한 교외과제 간접비 총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간접비 총금액 1천만원당 500만원

※결과물 제출 기한: 상환기간 이내(기본 2년, 심의위원회 심의 후 연장 가능)

※ 동일 연구실적물에 대해 교내 연구·산학협력 지원제도와의 중복 인정은 가능하나, 상환면제는 1회에 한하여 적용됨

[참고] 우리대학 연구개발기관계정 균등지급 운영 내용

▪ **균등지급 개요:** 기관계정 책임자(산학협력단장)가 학생연구자에게 기관계정을 통해 균등지급액을 지급

구분	내용				
균등지급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석박사 학생연구자 전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균등지급 대상 적용 예외	1. 직장인 학생연구자 2. 학사과정 학생연구자 3. 50% 이상의 학생인건비를 외부기관 주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지급받는 학생연구자 4. BK21 장학금 수혜자 5.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과제 중 연구책임자가 이공계 대학원생인 학생연구자 6. 그 밖의 사유로 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예외로 규정한 학생연구자				
[기관계정] 균등지급금액 책정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서 고시한 과기정통부 계상기준 금액의 20% 이상 지급함				
	과정	학사	석사(석박 3학기 이하)	박사(석박 4학기 이상)	
	고시기준	월 130만원	월 220만원	월 300만원	
	균등지급액	-	월 44만원	월 60만원	
학생인건비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등)연구책임자계정에서 기관계정으로 이체한 균등지급액을 기관계정에서 대상학생별 지급함 • (차등)연구책임자는 균등지급액 제외 금액을 학생 연구자 업무 기여도에 따라 추가 지급함 				
균등지급대상자의 Stipend 지원 예시	학생	균등지급대상	대여신청액	스타이펜드 지원금 통합	
				균등지급액 지원	스타이펜드 대여
	석사과정 A	O	800,000원	440,000원	360,000원
석사과정 B	X	800,000원	0	800,000원	

※이공계연구생활장려금 지원 학생의 균등지급액은 기관계정에서 순수지원함(상환 의무 없음)

6. 사업 안정성 저해 사례 관리

안정성 저해 사례 관리: ① 학생인건비 적정 지급 및 과제 수주 노력 점검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연구책임자계정 전년도 이월적립금 보유 여부
- 학생인건비 과소계상 방지: 대여금 有 교원: 직접비의 20% 이상 책정 의무 (그 외 교원: 직접비의 10% 책정)
- 대학원생 선발 규모 관리: 대여금 有 교원: 최근3년 평균 학생대비 5명 초과선발 금지(필수)
- 연구개발사업 신청 및 과제 수주노력 관리: 참여교원의 연구개발사업 신청 및 수주현황 모니터링
- 참여대학원생 변동여부 관리: 학적상태 및 전일제 여부 점검

① 연구책임자

- 시기: 매 학기 말
- 자체점검서 및 증빙서류 서류제출

② 연구관리팀

- 자체점검서 접수
- 자체점검 항목 확인 및 내용 검토
- 유관부서 협조요청

③ 자체평가위원회

-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 자체평가위원회 보고 진행
- 안정성 저해 사례 관리 결과보고

- 2026년 우수연구실 인센티브제도 세부 선정기준 마련(2025-4차 위원회 심의, 상반기 중 시행예정)
- 학생인건비 지급비율·기관계정 기여도 기반 우수연구실 선정
- 우수연구실에 최대 1억원 범위에서 추가 학생인건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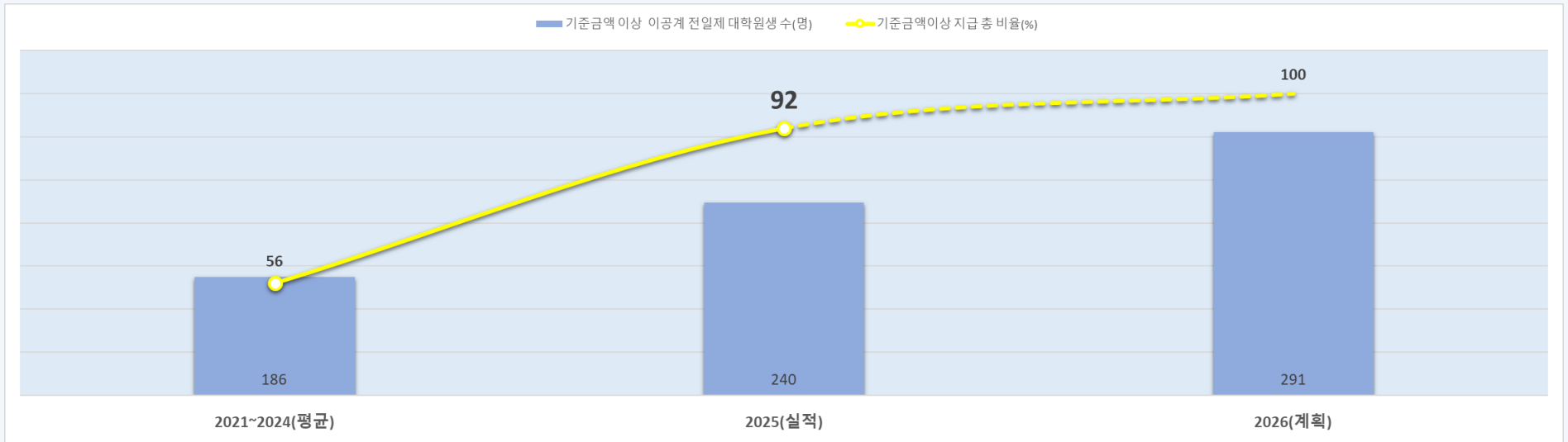
안정성 저해 사례 관리: ② 우수연구실 인센티브 제도 시행

7.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실적 및 목표

전체 **기준금액 이상** 대학원생 비율 증가: 최근 4년 평균 대비 **63% 이상** 상향



연도	기준금액 이상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 수(명)						총 지급액(백만원)			1인당 지급액(백만원)		
	합계		석사과정		박사과정		합계	석사과정	박사과정	합계	석사과정	박사과정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21~2024 (평균)	186	56	129	58	57	53	3,715	2,276	1,439	20.0	17.6	25.2
2025(실적)	240	92	160	90	80	94	2,513	1,360	1,153	9.6	7.7	13.6
2026(계획)	291	100	195	100	96	100	6,566	3,853	2,713	19.6	16.1	28.2



2026년 목표: **기준금액 이상** 대학원생 비율 **100%** → **기준금액 초과 지급** 학생 비율 상향

7.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실적 및 목표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 **보통이상(3.5점/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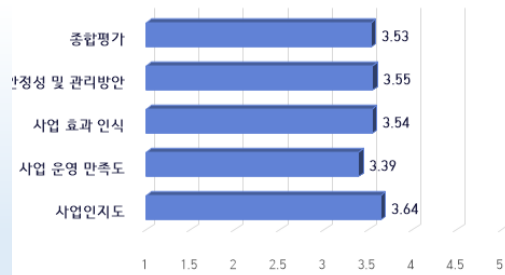


2025년
대학차원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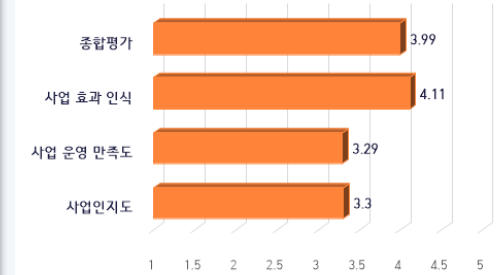
대학차원 사업지원 다각도로 추진

- **교내연구제도와 연계:** 교내 연구제도와와의 연계 및 연구성과혁신TF 참여로 협업 강화. 학생인건비 지원제도 개선
- **환류 체계성:** 교내 의견수렴 반영 대여-상환형 설정. 사업 심의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구성원(참여교원/대학원생) 사업 만족도 결과 반영

(전임교원)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 인지도 및 만족도



(대학원생)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 인지도 및 만족도



2026년
대학차원 계획

요구사항	시행계획
맞춤형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 설명회 정기 개최 및 맞춤형 안내 · 3년 이내 신임교원 대상 맞춤형 설명회 개최 및 1:1 상담 ·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및 교직원 공지, 이메일 안내, 대학원교학팀 및 참여학과 협조를 통한 안내창구 다양화
사업 운영방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여대상별 운영방식을 다양화, 지원방식 확대하는 것으로 운영방안 개선 · 대여금 상환 방식에서 연구처 인정하는 교원/대학원생의 연구업적 또는 대학 기관계정 기여(의무이체분) 상환 면제 방안 검토
사업 수행 시 교원 부담 완화 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등지급 순수지원에 추가로 신임교원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제도 신설 · 교외과제수주 실적과 상응하는 연구/과제실적물과 매칭하여 장려금 대여에 대해 상환액 면제 제도 신설 · 우수연구실 인센티브 제도 마련하여 학생인건비를 기준금액 이상 초과 지급하는 우수 연구책임자에게 학생인건비 추가

2026년 목표: **기준금액 이상 대학원생 비율 100%** → **기준금액 초과 지급 학생 비율 상향**

8. 2026학년도 설명회 사전 질의사항

1. BK 사업 참여중인 인력도 수령 가능한가요?

- 산단회계를 통해 지급받고 있는 BK장학금이 있다면 기준금액 이상이므로 지원대학원생이 아닙니다. 산단회계를 통해 지급받고 있는 BK장학금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생활장려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을 지급받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대학원생의 자격요건은 '연구활동중인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 입니다.

3. 본 지원사업이 교내 교육조교C 제도와는 무관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교육조교C 제도는 교비(학교 재원)로 운영되는 제도로 월 인건비(또는 등록금)이 산단 회계를 통해 지급되지 않으므로 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연구생활장려금 지원대학원생 요건에 해당한다면 본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4. 수료생도 장학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으로 학적상태가 재학 또는 수료생일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8. 2026학년도 설명회 사전 질의사항

4. 학비를 면제받는 조교도 연구생활장려금 대상자인가요? 대상자가 맞다면, 이공계 랩실에 소속되어 조교를 하고 동시에 연구과제를 수행하지만 과제에 연구원등록을 하지 않아 연구생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학비(등록금) 면제는 교비 재원으로 지원되는 사항으로, 연구생활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다만, 연구생활장려금은 '연구활동 증인'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교외연구과제 참여인력으로 등록된 내역을 기준으로 실제 연구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5. 지원범위

- 산단 회계에서 지급받은 인건비 총액이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에서 정한 기준금액(석사 80만원, 박사 110만원)에 대해 부족분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단 회계로 지급받는 금액이 30만원이라면, 지원금으로 50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참여하고 있는 학생연구원이 현재 3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면 50만원 중 순수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학생연구원이 균등지급대상에 해당하므로 균등지급분은 순수지원 대상입니다. 대여금액 50만원 중 14만원은 순수지원이고 36만원만 대여금입니다.